

## 산업 게시판 – 7/23/2014 – 더마플래닝

캘리포니아주 미용국 (미용국)은 피부에 대한 더마플래닝, 블레이딩 또는 표피 레벨링 업무가 미용국의 피허가자를 위한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허가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.

더마플래닝은 면도기 날 도구 (일반적으로 수술용 블레이드)을 이용하여 각질을 제거 (면도)하고 미세 연모 (솜털)의 피부를 처리하는 과정이다.

미용국은 더마플래닝을 침습적 시술로 간주한다. 캘리포니아 규정법의 16 제목, 9 부, 991 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:

### 침습적 시술

(a) 피허가자는 얼굴이나 신체 생체 조직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그러한 어떠한 행위들은 침습적 시술로 간주됩니다.

(b) 침습적 시술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다음 사항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:

- (1) 근육을 수축시키는 전기를 가하는 것.
- (2) 생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국소 로션, 크림 또는 다른 물질을 바르는 것.
- (3) 전기 분해 요법에 사용하는 바늘을 제외한 금속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.
- (4) 죽어 있는 표피층 아래의 피부를 마모하는 것.
- (5) 면도기 날 도구를 사용하여 피부를 제거하는 것.

주의: 미용국 당국이 인용한 내용: 비즈니스와 전문직 코드의 7312 절. 참조: 비즈니스와 전문직 코드의 7312(e), 7316, 7320, 7320.1 절.